

의안번호	2218288
의 퇴 인	윤한홍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7.
추계번호	26F21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
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31년 364억원, 2035년 408억원 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총 1,927억원(연평균 3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소형모듈원자로(이하 SMR)의 국가전략기술 추가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
 - 법인세·소득세는 5년간 총 2,409억원(연평균 48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농어촌특별세는 5년간 총 482억원(연평균 96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31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(안 제24조제1항)	-364	-374	-385	-396	-408	-1,927	-385
-법인세·소득세	-455	-468	-481	-495	-510	-2,409	-482
-농어촌특별세	91	94	96	99	102	482	96

주: 1) 일몰 이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2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-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 → (개정안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, 소형모듈원자로	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기본공 제 적용기한 폐지 - 반도체 외 분야 기본공제 적용기한 (현행) 2029.12.31. → (개정안) 폐지 ※반도체 분야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은 현행 유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×	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(소형모듈원자로) SMR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SMR의 기술 범위 및 해당 분야의 R&D·투자규모 등을 기초로 향후 R&D 지출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관련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SMR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-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 적용기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31년부터 발생
 -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본공제는 2029년 귀속분을 마지막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므로, 2030년 귀속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
 - 적용기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31년(2030년 귀속분)부터 발생함
-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~2024년 기술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5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

비중은 2023~2024년의 합산실적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시설투자 금액의 비중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

※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가 시행

-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놓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평균값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(초과액의 10%)는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적용기한 폐지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-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분야 투자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로 기업의 투자 대상·규모·일정 등이 변화할 수 있으나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」, 2026.3.

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10.

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’ 등 8개 분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10%)를 적용함
 -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-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폐지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2]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의 공제율과 적용기한: 현행 및 개정안

(단위: %)

	공제율			적용기한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현행	개정안
일반기술	1	5	10	없음	없음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없음	없음
국가전략기술(반도체외)	15	15	25	2029.12.31.	삭제
국가전략기술(반도체)	20	20	30	2029.12.31.	2029.12.31.

주: 1. 음영은 현행 및 개정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

2.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받는 우대공제율은 제외한 수치임

□ (공제실적)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1조 6,424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한편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1조 7,693억원 수준

[표 3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	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	국가전략기술	8	10	8,234	8,251
	계	4,455	1,496	13,813	19,764
2024 신고	일반	4,662	2,094	8,798	15,554
	신성장·원천기술	17	1	219	236
	국가전략기술	66	50	517	633
	계	4,746	2,144	9,534	16,424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2조 4,204억원으로 2024년 대비 47.4% 증가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월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 -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의 분야별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연간 4회 개최
 -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는 제4차(2022년 12월) 심의회부터 시작됨
 - 2022~2024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는 총 75조 2,219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93.6% 수준
 -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인정받은 설비투자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전체	반도체	이차전지	디스플레이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기타
설비투자	752,219	704,113	30,463	16,759	454	430
(분야별 비중)	(100.0)	(93.6)	(4.0)	(2.2)	(0.06)	(0.06)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기술별로 구분하면,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5,943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
 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74.7, 신성장·원천기술 0.8, 국가전략기술 24.6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8, 중견기업 0.7, 대기업 98.5

[표 5]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비중×24,204억원)
기술별	일반	11,470	15,554	27,025 (74.7)	18,075
	신성장원천기술	42	236	279 (0.8)	186
	국가전략기술	8,251	633	8,885 (24.6)	5,943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비중×5,943억원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8	66	75 (0.8)	50
	중견기업	10	50	59 (0.7)	40
	대기업	8,234	517	8,751 (98.5)	5,85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~2024년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,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－ 기술분야별 비중: 반도체: 93.6%, 반도체 외 6.4%

[표 6] 기업규모 및 기술분야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: 국가전략기술

(단위: 억원, %)

기업규모별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반도체	반도체 외
중소기업	50	47	3
중견기업	40	37	3
대기업	5,853	5,479	374
계 (비중)	5,943 (100)	5,563 (93.6)	380 (6.4)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공제액 전망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의 2025년 공제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현행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에 따르면, 2029년 귀속분(2030년 징수)이 마지막 적용 대상
- 개정안에 따라 적용기한이 폐지되면, 기본공제는 영속적으로 적용함
 - 2029년 이후의 설비투자 증감률은 2029년 수준(2.9%)으로 고정하여 전망

[표 7] 국가전략기술의 반도체 외 기술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(국가전략기술)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	'35
반도체 외	404	416	429	442	455	468	481	495	510
- 중소기업	3.5	3.6	3.7	3.9	4.0	4.1	4.2	4.3	4.4
- 중견기업	2.8	2.9	3.0	3.1	3.2	3.2	3.3	3.4	3.5
- 대기업	398	410	423	435	447	460	474	488	502

주: 1. 현행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에 따르면, 2030년(2029년 귀속분)이 마지막 적용 대상
 2. 음영 부분의 공제액은 개정안에 따라 적용기한(2029.12.31.)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발생

□ (세수효과)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(2029.12.31.)을 폐지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31년 (2030년 귀속분)부터 발생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함

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8] 국가전략기술의 반도체 외 분야 적용기한 폐지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'31	'32	'33	'34	'35
법인세 등	-455	-468	-481	-495	-510
농어촌특별세	91	94	96	99	102
세수효과 (-공제액×[1-0.2])	-364	-374	-385	-396	-408

주: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31년 364억원, 2035년 408억원 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총 1,927억원(연평균 3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추가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세수효과가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
 - 법인세·소득세는 5년간 총 2,409억원(연평균 48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농어촌특별세는 5년간 총 482억원(연평균 96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31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 (안 제24조제1항)	-364	-374	-385	-396	-408	-1,927	-385
- 법인세·소득세	-455	-468	-481	-495	-510	-2,409	-482
- 농어촌특별세	91	94	96	99	102	482	96

주: 1) 일몰 이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2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